

## 가스보일러 시공시 하자담보에 관한 법령 및 규정

### ◆ 건설산업기본법 관련조항

#### 제28조 (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)

-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·철근콘크리트구조·철골구조·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,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, 기타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. [가스보일러 하자담보기간:1년]
-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.
- 1.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
  - 2.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
  - 3.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
- 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법령(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)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#### 제44조 (건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)

- ①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② 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④ 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### ◆ 도시가스공급규정 관련조항

#### ● 서울시 공급규정

#### 제13조 (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)

- ① 제12조제1항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사용시설(온수보일러 등 그 부대시설 포함)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도면(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 온수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)을 작성하여 당사에 교부하여야 하며,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자에게 하여야 합니다.
- ② 가스사용기기를 설치(교체를 포함) 한 후 처음으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당사에 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, 당사는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상태가 제규정에 적합하며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공급 요청일로부터 1일이내에 가스를 공급합니다.

#### ● 경기도 공급규정

#### 제15조(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)

- 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시설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제20조의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기록 및 도면(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)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공급전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(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를 교체한 종전의 수요자를 포함한다)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회사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.
- ③ 가스보일러 등(온수기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)을 설치한 자가 관밀연결공사를 시행코자할 경우 제1항의 시공기록을 회사에 제출하고, 하자이행보증증권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증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, 회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전안전점검 시 시공자가 하자이행보증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## 가스보일러시공자 보험가입의무화 제도시행

◆ 도시가스사업법 개정(2003. 5. 27 법률 제6886호)으로 가스보일러 시공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됨.

▶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(보험가입) 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1. - 생략

2. - 생략

3.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공자

※ 보험가입 위반자 과태료 500만원 부과

▶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②법 제43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공자는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.

※ 도시가스사업자가 온수보일러 및 부대시설에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여부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함.(별표11)

※ 시행규칙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3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.

◆ 기본보상한도 : 대인배상 사망 1인당 8천만원 /재산피해 3억원 범위내 /

부상1인당 1천5백만원

▶ 보험기간 : 1년

▶ 보험기간 연장 : 휴업,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보험증권만료일로부터 (12개월 연장)

(보험료 미납 등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 된 경우 제외 됨)

▶ 특별약관 :

- 가스시설시공 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가능.

- 사업 양도 시에도 보험이 승계됨

제 1조 가스보일러설치·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	
(본래의 종류)	
제 1 항	제 2 항
제 3 항	제 4 항
제 5 항	제 6 항
제 7 항	제 8 항
제 9 항	제 10 항
제 11 항	제 12 항
제 13 항	제 14 항
제 15 항	제 16 항
제 17 항	제 18 항
제 19 항	제 20 항
제 21 항	제 22 항
제 23 항	제 24 항
제 25 항	제 26 항
제 27 항	제 28 항
제 29 항	제 30 항
제 31 항	제 32 항
제 33 항	제 34 항
제 35 항	제 36 항
제 37 항	제 38 항
제 39 항	제 40 항
제 41 항	제 42 항
제 43 항	제 44 항
제 45 항	제 46 항
제 47 항	제 48 항
제 49 항	제 50 항
제 51 항	제 52 항
제 53 항	제 54 항
제 55 항	제 56 항
제 57 항	제 58 항
제 59 항	제 60 항
제 61 항	제 62 항
제 63 항	제 64 항
제 65 항	제 66 항
제 67 항	제 68 항
제 69 항	제 70 항
제 71 항	제 72 항
제 73 항	제 74 항
제 75 항	제 76 항
제 77 항	제 78 항
제 79 항	제 80 항
제 81 항	제 82 항
제 83 항	제 84 항
제 85 항	제 86 항
제 87 항	제 88 항
제 89 항	제 90 항
제 91 항	제 92 항
제 93 항	제 94 항
제 95 항	제 96 항
제 97 항	제 98 항
제 99 항	제 100 항
제 101 항	제 102 항
제 103 항	제 104 항
제 105 항	제 106 항
제 107 항	제 108 항
제 109 항	제 110 항
제 111 항	제 112 항
제 113 항	제 114 항
제 115 항	제 116 항
제 117 항	제 118 항
제 119 항	제 120 항
제 121 항	제 122 항
제 123 항	제 124 항
제 125 항	제 126 항
제 127 항	제 128 항
제 129 항	제 130 항
제 131 항	제 132 항
제 133 항	제 134 항
제 135 항	제 136 항
제 137 항	제 138 항
제 139 항	제 140 항
제 141 항	제 142 항
제 143 항	제 144 항
제 145 항	제 146 항
제 147 항	제 148 항
제 149 항	제 150 항
제 151 항	제 152 항
제 153 항	제 154 항
제 155 항	제 156 항
제 157 항	제 158 항
제 159 항	제 160 항
제 161 항	제 162 항
제 163 항	제 164 항
제 165 항	제 166 항
제 167 항	제 168 항
제 169 항	제 170 항
제 171 항	제 172 항
제 173 항	제 174 항
제 175 항	제 176 항
제 177 항	제 178 항
제 179 항	제 180 항
제 181 항	제 182 항
제 183 항	제 184 항
제 185 항	제 186 항
제 187 항	제 188 항
제 189 항	제 190 항
제 191 항	제 192 항
제 193 항	제 194 항
제 195 항	제 196 항
제 197 항	제 198 항
제 199 항	제 200 항
제 201 항	제 202 항
제 203 항	제 204 항
제 205 항	제 206 항
제 207 항	제 208 항
제 209 항	제 210 항
제 211 항	제 212 항
제 213 항	제 214 항
제 215 항	제 216 항
제 217 항	제 218 항
제 219 항	제 220 항
제 221 항	제 222 항
제 223 항	제 224 항
제 225 항	제 226 항
제 227 항	제 228 항
제 229 항	제 230 항
제 231 항	제 232 항
제 233 항	제 234 항
제 235 항	제 236 항
제 237 항	제 238 항
제 239 항	제 240 항
제 241 항	제 242 항
제 243 항	제 244 항
제 245 항	제 246 항
제 247 항	제 248 항
제 249 항	제 250 항
제 251 항	제 252 항
제 253 항	제 254 항
제 255 항	제 256 항
제 257 항	제 258 항
제 259 항	제 260 항
제 261 항	제 262 항
제 263 항	제 264 항
제 265 항	제 266 항
제 267 항	제 268 항
제 269 항	제 270 항
제 271 항	제 272 항
제 273 항	제 274 항
제 275 항	제 276 항
제 277 항	제 278 항
제 279 항	제 280 항
제 281 항	제 282 항
제 283 항	제 284 항
제 285 항	제 286 항
제 287 항	제 288 항
제 289 항	제 290 항
제 291 항	제 292 항
제 293 항	제 294 항
제 295 항	제 296 항
제 297 항	제 298 항
제 299 항	제 300 항
제 301 항	제 302 항
제 303 항	제 304 항
제 305 항	제 306 항
제 307 항	제 308 항
제 309 항	제 310 항
제 311 항	제 312 항
제 313 항	제 314 항
제 315 항	제 316 항
제 317 항	제 318 항
제 319 항	제 320 항
제 321 항	제 322 항
제 323 항	제 324 항
제 325 항	제 326 항
제 327 항	제 328 항
제 329 항	제 330 항
제 331 항	제 332 항
제 333 항	제 334 항
제 335 항	제 336 항
제 337 항	제 338 항
제 339 항	제 340 항
제 341 항	제 342 항
제 343 항	제 344 항
제 345 항	제 346 항
제 347 항	제 348 항
제 349 항	제 350 항
제 351 항	제 352 항
제 353 항	제 354 항
제 355 항	제 356 항
제 357 항	제 358 항
제 359 항	제 360 항
제 361 항	제 362 항
제 363 항	제 364 항
제 365 항	제 366 항
제 367 항	제 368 항
제 369 항	제 370 항
제 371 항	제 372 항
제 373 항	제 374 항
제 375 항	제 376 항
제 377 항	제 378 항
제 379 항	제 380 항
제 381 항	제 382 항
제 383 항	제 384 항
제 385 항	제 386 항
제 387 항	제 388 항
제 389 항	제 390 항
제 391 항	제 392 항
제 393 항	제 394 항
제 395 항	제 396 항
제 397 항	제 398 항
제 399 항	제 400 항
제 401 항	제 402 항
제 403 항	제 404 항
제 405 항	제 406 항
제 407 항	제 408 항
제 409 항	제 410 항
제 411 항	제 412 항
제 413 항	제 414 항
제 415 항	제 416 항
제 417 항	제 418 항
제 419 항	제 420 항
제 421 항	제 422 항
제 423 항	제 424 항
제 425 항	제 426 항
제 427 항	제 428 항
제 429 항	제 430 항
제 431 항	제 432 항
제 433 항	제 434 항
제 435 항	제 436 항
제 437 항	제 438 항
제 439 항	제 440 항
제 441 항	제 442 항
제 443 항	제 444 항
제 445 항	제 446 항
제 447 항	제 448 항
제 449 항	제 450 항
제 451 항	제 452 항
제 453 항	제 454 항
제 455 항	제 456 항
제 457 항	제 458 항
제 459 항	제 460 항
제 461 항	제 462 항
제 463 항	제 464 항
제 465 항	제 466 항
제 467 항	제 468 항
제 469 항	제 470 항
제 471 항	제 472 항
제 473 항	제 474 항
제 475 항	제 476 항
제 477 항	제 478 항
제 479 항	제 480 항
제 481 항	제 482 항
제 483 항	제 484 항
제 485 항	제 486 항
제 487 항	제 488 항
제 489 항	제 490 항
제 491 항	제 492 항
제 493 항	제 494 항
제 495 항	제 496 항
제 497 항	제 498 항
제 499 항	제 500 항
제 501 항	제 502 항
제 503 항	제 504 항
제 505 항	제 506 항
제 507 항	제 508 항
제 509 항	제 510 항
제 511 항	제 512 항
제 513 항	제 514 항
제 515 항	제 516 항
제 517 항	제 518 항
제 519 항	제 520 항
제 521 항	제 522 항
제 523 항	제 524 항
제 525 항	제 526 항
제 527 항	제 528 항
제 529 항	제 530 항
제 531 항	제 532 항
제 533 항	제 534 항
제 535 항	제 536 항
제 537 항	제 538 항
제 539 항	제 540 항
제 541 항	제 542 항
제 543 항	제 544 항
제 545 항	제 546 항
제 547 항	제 548 항
제 549 항	제 550 항
제 551 항	제 552 항
제 553 항	제 554 항
제 555 항	제 556 항
제 557 항	제 558 항
제 559 항	제 560 항
제 561 항	제 562 항
제 563 항	제 564 항
제 565 항	제 566 항
제 567 항	제 568 항
제 569 항	제 570 항
제 571 항	제 572 항
제 573 항	제 574 항
제 575 항	제 576 항
제 577 항	제 578 항
제 579 항	제 580 항
제 581 항	제 582 항
제 583 항	제 584 항
제 585 항	제 586 항
제 587 항	제 588 항
제 589 항	제 590 항
제 591 항	제 592 항
제 593 항	제 594 항
제 595 항	제 596 항
제 597 항	제 598 항
제 599 항	제 600 항
제 601 항	제 602 항
제 603 항	제 604 항
제 605 항	제 606 항
제 607 항	제 608 항
제 609 항	제 610 항
제 611 항	제 612 항
제 613 항	제 614 항
제 615 항	제 616 항
제 617 항	제 618 항
제 619 항	제 620 항
제 621 항	제 622 항
제 623 항	제 624 항
제 625 항	제 626 항
제 627 항	제 628 항
제 629 항	제 630 항
제 631 항	제 632 항
제 633 항	제 634 항
제 635 항	제 636 항
제 637 항	제 638 항
제 639 항	제 640 항
제 641 항	제 642 항
제 643 항	제 644 항
제 645 항	제 646 항
제 647 항	제 648 항
제 649 항	제 650 항
제 651 항	제 652 항
제 653 항	제 654 항
제 655 항	제 656 항
제 657 항	제 658 항
제 659 항	제 660 항
제 661 항	제 662 항
제 663 항	제 664 항
제 665 항	제 666 항
제 667 항	제 668 항
제 669 항	제 670 항
제 671 항	제 672 항
제 673 항	제 674 항
제 675 항	제 676 항
제 677 항	제 678 항
제 679 항	제 680 항
제 681 항	제 682 항
제 683 항	제 684 항
제 685 항	제 686 항
제 687 항	제 688 항
제 689 항	제 690 항
제 691 항	제 692 항
제 693 항	제 694 항
제 695 항	제 696 항
제 697 항	제 698 항
제 699 항	제 700 항
제 701 항	제 702 항
제 703 항	제 704 항
제 705 항	제 706 항
제 707 항	제 708 항
제 709 항	제 710 항
제 711 항	제 712 항
제 713 항	제 714 항
제 715 항	제 716 항
제 717 항	제 718 항
제 719 항	제 720 항
제 721 항	제 722 항
제 723 항	제 724 항
제 725 항	제 726 항
제 727 항	제 728 항
제 729 항	제 730 항
제 731 항	제 732 항
제 733 항	제 734 항
제 735 항	제 736 항
제 737 항	제 738 항
제 739 항	제 740 항
제 741 항	제 742 항
제 743 항	제 744 항
제 745 항	제 746 항
제 747 항	제 748 항
제 749 항	제 750 항
제 751 항	제 752 항
제 753 항	제 754 항
제 755 항	제 756 항
제 757 항	제 758 항
제 759 항	제 760 항
제 761 항	제 762 항
제 763 항	제 764 항
제 765 항	제 766 항
제 767 항	제 768 항
제 769 항	제 770 항
제 771 항	제 772 항
제 773 항	제 774 항
제 775 항	제 776 항
제 777 항	제 778 항
제 779 항	제 780 항
제 781 항	제 782 항
제 783 항	제 784 항
제 785 항	제 786 항
제 787 항	제 788 항
제 789 항	제 790 항
제 791 항	제 792 항
제 793 항	제 794 항
제 795 항	제 796 항
제 797 항	제 798 항
제 799 항	제 800 항
제 801 항	제 802 항
제 803 항	제 804 항
제 805 항	제 806 항
제 807 항	제 808 항
제 809 항	제 810 항
제 811 항	제 812 항
제 813 항	제 814 항
제 815 항	제 816 항
제 817 항	제 818 항
제 819 항	제 820 항
제 821 항	제 822 항
제 823 항	제 824 항
제 825 항	제 826 항
제 827 항	제 828 항
제 8	

## 가스보일러 오인연결 방지 개선방안

가스보일러 오인 연결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알려드리오니,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. 배경

- 가스보일러 설치 시 가스관과 급수관을 잘못 연결하여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함.

### 2. 현실태 및 문제점

- 가스관과 급수관을 구분 표시하기 위하여 스티커 또는 Tag를 부착하여 제품을 출하하고 있으나 쉽게 떨어지거나 제거됨.
- 협소한 장소에 가스보일러 설치 시 표시사항이 훼손되었을 경우 가스관과 급수관의 오인 연결 가능성 이 상존함.

### 3. 개선방안

#### ■ 가스안전공사 추진사항

##### ○ KGS Code 개정 추진

가스보일러 바닥면 배관연결부 주위에 “가스”, “급수” 등을 양각 또는 음각 글자로 표시하고 가스관 전용마개를 황색을 설치토록 표시방법. \*관련 Code: KGS AB131(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 기준) 및 KGS AB133(자연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기준)

##### ○ 가스보일러 제조사 간담회 개최

표시방법 보완에 대하여 제조사 의견을 수렴하고 최정(안) 확정.

#### ■ 도시가스 추진사항

##### ○ 공급전 안전점검 기준 개정

가스관 및 급수관의 연결 상태를 철저히 확인토록 공급전 안전점검 세부 기준 마련(도시가스사 내규 개정)

##### ○ 공급전 안전점검 철저 및 시공자 감독 강화

가스관과 급수관을 잘못 연결한 상태에서 가스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급전 안전점검을 확실히 하고 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

#### ■ 시공 관련 협회 추진사항

##### ○ 법정교육 철저 및 회원사 홍보 실시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에 따른 난방시공업 법정교육(주기 3년)시 가스관과 급수관을 오인 연결 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실시

회원사 정기 Workshop 및 원간지에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

##### ○ 연소기 전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사용 의무화 안내

2011년 4월부터 연소기용 배관용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구분 제조토록 의무화 되므로 가스보일러 시공 시 내열성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토록 회원사에 안내.